

시설사용에 관한 규정

시행일 : 2021. 06. 02.
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사용주체) 본교 시설은 본교 및 본교 구성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단체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3조(사용범위) 본교의 각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강의실 및 강당
2. 운동장 및 체육시설
3. 기타 캠퍼스내 부대시설

제 4조(관리주체) 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대관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총무관리처 관리팀에서 관장하며, 캠퍼스별 대관부서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5조(사용신청 및 승인) 학생, 교직원 또는 외부단체 등에서 본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, 행사일시, 행사내용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6조(사용자의 의무) 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용승인 목적이외 사용금지
2.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3. 질서 유지,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
4.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 7조(사용료) ① 본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이외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, 냉·난방비,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사용료의 책정은 「대관료 책정표」 및 「공간 대관 관리지침」을 따른다.
② 사용료는 절차에 따라 대관 담당부서에 입금하여야 한다.
③ 징수된 시설별 사용료는 별도로 정산한다.

제 8조(손해배상)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9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